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4. 21 선고 2019가단5111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피 고 C

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민선

변론 종결 2020. 4. 7

판결 선고 2020. 4. 21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제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8. 2. 5. 접수제
12473호로 마친 추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및같은 등기소같은 날 접수제
12474호로마친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유

이 유

1. 원고들의 주장

가. 원고들과 피고는 2017. 5. 4. 경 D에게 각 1억원씩을 대여하고, 원고들은 2017.5. 4. 청주시흥덕구 E, F, G토지에 관하여 각 채권 최고액 1억 5, 000만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, 한편 D가 위 각 토지 위에 집합건물 건축공사를 약 80% 마친 상태였으므로, 원고들과 피고 및 D는 위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건물에 대하여 소유 권 보존등기가 경료될 경우 추가로 위 건물에 대하여 즉시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약정(이하 '이 사건 추가약정'이라고 한다)을 하였다.

나. D는 2018. 3. 14. 위 토지들 위에 신축된 별지제 2목록 기재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뒤, 피고와 공모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8. 2. 5. 접수 제 12473호로 채권 최고액 1억 5, 000만원의 추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 12474호로 채권 최고액 1억 5, 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.

다. 위와 같이 피고만이 위나, 항기재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원고들의 위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청구권을 침해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,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나. 항기재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중 이미 타인에게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된 H호, I호, J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말소할 의무가 있다.

2.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

직권으로 살피건대, 이 법원은 2020. 2. 6. 원고들에게 부족인 지대 217, 500원을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, 원고 A는 2020. 2. 10., 원고 B는 2020. 2. 12. 위 명령을 각 수령하고도 현재까지 위 보정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.

3. 결론

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,

판사 이정권

별지